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한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의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긴급지원주택의 공급대상 지역 명확화 및 입주자 후속 지원을 위한 서비스연계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용면적 85m² 초과 주택의 입주대상자 범위를 명확히하여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의 주거지원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10조)
- 나. 지자체 등에 입주자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 입주자에 대한 후속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8조)
- 다. 전국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긴급지원주택의 공급대상지역을 명확히하고자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팩스 : 044-201-55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전화 044-201-4531, 4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